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91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조합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22,63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8,211,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 26.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 본점이 소재하는 상태에서 지점(영업점)설치를 위해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외 1필지 소재 집합건물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303.3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3,413,900,000원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직접 사용하는 부분(160.18㎡)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감면하고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나머지 임대부분(143.14㎡)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합하여, 취득세 64,440,770원, 농어촌특별세 17,645,070원, 지방교육세 6,444,070원 합계 88,529,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당초 취득세율 산출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 14,423,040원 및 가산세 8,211,0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884,6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326,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8. [redacted]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비상근이사장 1명과 직원 5명이 근무하던 소규모 신용협동조합으로서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무신고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위 세무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줌에 따라 원고는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지방세(취득세)감면 결정 및 통지서까지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이와 같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고,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 법무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취득세신고서상 신고인의 인적사항, 취득물건의 내용, 과세표준액(3,400,000,000원) 등은 인쇄된 문자로 되어 있는 반면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수기로 '88,529,91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역시 나머지 기재사항과는 달리 '과세표준액',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란은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과세표준액은 '3,413,900,000원'으로 위 취득세신고서의 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표준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사실, 피고가 2011. 1. 26. 원고가 같은 날 신고·납부한 바에 따라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지방세(취득세)감면 결정 및 통지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피고 소속 세무담당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세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잘못 설명을 하고, 이를 전제로 산출된 취득세 등의 납부서와 지방세(취득세)감면 결정 및 통지서 등을 발급하였고 하더라도, 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비과세 또는 감면 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과세 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대도시지역인 서울특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구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이 명백한 점, ③ 과세관청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원고가 이를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1993. 11. 23. 선고 93누1539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설명 및 관련 서류의 교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등의 납부의무가 완결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납된 농어촌특별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5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저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100분의 10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